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원의 자료제출요구 근거 신설〉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04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 · 어기구 · 박 정 · 허종식 · 김남희 · 윤후덕
이연희 · 박희승 · 이훈기 · 박해철 · 신영대 · 전재수
이수진 · 임미애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4. 8. 22.

3. 회 부 일 : 2024. 8. 23.

※ 의안번호 : 31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103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10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1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직접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서의 발부, 요구서의 송달 및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항, 제15조제1항·제3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 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 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 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 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 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위원회----- -----포함한다) 또는 의원이- ----- -----위원장이, 의원의 경우 에는 해당 의원-----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 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신 설>	⑥ ----- ----- -----이 경우 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는 전자 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⑦·⑧ (생략)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은-----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서류등을 요구한 의원의 명의 또는 서류등----- ----- -----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법」 제128조¹⁾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²⁾에
서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 1)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언감정법」”이라 함) 제5조³⁾에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구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5조는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의장·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개별 의원이 시의성 있는 자료확보를 위하여 국정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개인 명의로 대상기관에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원이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자료확보를 보다 원활히 하고 의정활동의 신속성·적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3) 「증언감정법」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첫째, 개별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의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①국회법상 대외적 행정행위는 「국회법」에 따라 대표권⁴⁾을 갖는 의장·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②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사의 결정은 의결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고 ③현행법도 타 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⁵⁾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표-2] 현행 국회관계법상 자료제출요구 요건 비교

법 률	자료제출요구 요건
인사청문회법	<u>위원회 의결</u>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국회법	<u>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u>
	청문회, 국정감사·조사 관련 자료제출요구는 <u>위원회 의결</u>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폐회 중 개별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으면 <u>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u> 후 해당 기관에 요구
국정감·조사법	<u>위원회·소위원회·반의 의결</u>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참고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의회에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개별 의원에게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4)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5) 위원회 의결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여·야 간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자료제출요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표-3] 주요국 의회의 자료제출요구 요건 비교

국가	주체	내용
미국	(상원) 상임위, 소위원회	소환장에 의해 서신, 서적, 문서,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원) 위원회, 소위원회	서적·기록·서신·각서·문서 등의 제출을 소환장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해 요구
영국(하원)	공범안심사위,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의사규칙에서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여부를 각 위원회별로 달리 규정
일본	각 의원(議院)과 각 의원의 위원회	각 의원(議院) 또는 위원회가 심사·조사를 위해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

* 자료: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주요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3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둘째, 자료제출 요구서의 송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은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민사소송법」은 송달에 관하여 도달주의 원리에 따라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교부송달’⁶⁾을 원칙으로 하되, 교부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⁷⁾을 실시하고,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송달’⁸⁾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6)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7)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8)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경우”의원의 서류등 제출요구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서의 송달에 있어서 다양한 송달방식 간 적용상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분명히 하면서 관계 법률의 해석·적용 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⁹⁾이나 「행정심판법」(제54조)¹⁰⁾ 등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적 송달의 요건, 효력 발생 시점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¹⁾.

- 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⑤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0) 「행정심판법」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11) 이와 더불어,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뿐만 아니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도 전자적 방식의 송달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 등으로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 요구 시 전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3426)이 발의되어 계류중임.

참고로, 국회관계법에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03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0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02호)과

[표-2]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취지 유사법률안

국회법 개정안 (김정호의원안)	동 개정안 (김정호의원안)	국감국조법 개정안 (김정호의원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김정호의원안)
• 의원의 안전 심의, 국정감사·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 근거 마련	• 의원의 안전심의, 국정감사·조사 관련 자료제출요구서 발부 • 의원 자료 제출요구서의 전자문서 송달 근거 마련 •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한 의원의 고발 근거 의무 규정	• 위원의 국정감사·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 의원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규정	• 위원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요구 근거 마련 • 요구시 5일 내 제출 및 경과 사유서 제출 • 불응 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경고 근거 마련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가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대표발의, 2203426)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